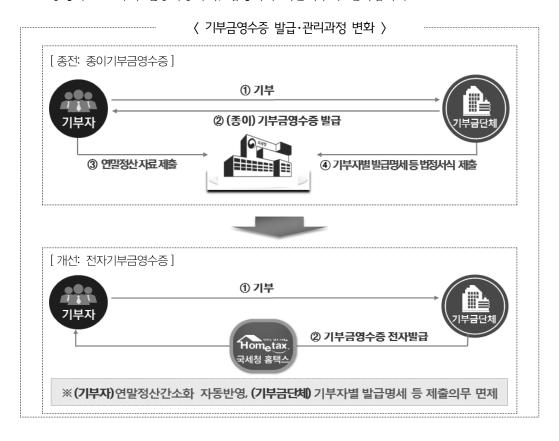
4.1.부터 「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」시범운영 실시

- 국세청, 2021. 4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「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('21.7.1.시행 예정)」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, 제도 홍보 및 이용자 참여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.
- (시범운영 기간) '21년 4월 1일~ 6월 30일(91일)
- (개요)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 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(발급 방법) 기부금단체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하며.
- (개인정보 보호) 기부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번호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.
- (도입 효과)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이 편리해지고, 기부문화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- (기부자)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.
 - * 19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인원(출처: 국세통계연보): 530만 명
- (기부금단체) '21년 7월 1일 이후 전자영수증 발급분은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·보관·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
- (기부문화 활성화) 또한,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.
 - *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
- 시범운영 기간에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, 「국민이 편안한, 보다 나은 국세행정」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
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개요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·관리할 수 있 도록 '21년 7월 1일부터 「전자기부금영수증」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(제도 개요) 홈택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*하는 제도 로.
 - * 기부금단체의 의무발급 사항은 아니며, 이용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도 도입
- (종이 기부금영수증)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,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,
- (전자 기부금영수증) 앞으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고, 소득(법인)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즉시 활용가능하며, 법정서식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.



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

- (시범운영 대상)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부금단체*와 기부자
 - *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부여
- (시범운영 기간)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·참여 등을 위해 '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(91일간)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*을 실시합니다.
 - * 시범운영기간 발급한 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('저장' 또는 '삭제') 여부 선택가능
- (원격상담 서비스)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동안 홈택스 원격상담서비스*를 지원할 예정입니다.
 - * 이용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실제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상담 실시
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이용방법

- (발급방식)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하여 일괄발급 또는 개별발급이 가능합니다.
- (일괄발급)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(엑셀파일)를 변환하거나, 홈택스에서 제 공하는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할 수 있고.
- (개별발급) 건별로 기부자,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도 있습니다.
- (미발급시) 또한,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
 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(휴대폰 스마트알림 서비스) 기부자가 모바일 '손택스'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를 하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전송 받을 수 있으며,
 - * (설정방법) 손택스 ≫ 우측상단 "≡" ≫ 설정 ≫ 스마트알림(PUSH) 수신동의 설정 "변경" ≫ 알림 ≫ 알림 받기
- (실시간 조회기능) 기부자와 기부금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·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1 개인정보 보호 강화

■ (보안성 강화)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 또는 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 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였습니다.

〈 기부자 주요 인적사항 보안처리(예시) 〉

- 1. 주민등록번호: 210101-******
- 2.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: 123-82-*****
- 3. 휴대전화번호: 010-* * * *-1234
- 4. 주소지: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**
- (휴대전화번호 발급)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*하고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단체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 - * (접근경로) 홈택스 ≫ 조회/발급 ≫ 전자기부금영수증 ≫ 메인메뉴 ≫ 휴대전화번호등록

5 제도 도입 효과

■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

기부자 혜택

- (신고편의 제고)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하고, 소득(법인)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으로써.
- 기부자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가 가능하여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됩니다.
- (가산세 부담완화)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
 증 발급행위가 방지되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.

기부금단체 혜택

- (납세협력비용 감축) 기부금영수증을 전자적 방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하여 영수증 발급
 및 관리비용이 절감되고,
- (법정서식 제출편의) '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·보관·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

- (기부문화 활성화) 적격단체에게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권한 없는 단체 의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 방지함으로써,
 -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,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품토가 조성되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(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효과) 기부자 기부금단체 ✓ 연말정산간소화자동 반영(영수증수집·제출*) ✓ 소득세, 법인세 등 적격증빙 활용 ✓ 기부내역 한눈에, 실시간 조회 가능 ✓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완화 ✓ 주요 인적사항 비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✓ 투명성 제고로 기부문화 활성화

6 향후 추진방향

-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편의기능을 적극 홍보*하고,
 - *국세청 누리집[안내코너,동영상 게시, 매뉴얼, 홍보물 제작·배포 등
-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시스템 불편사항이나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·보완해 나가겠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「국민이 편안한, 보다 나은 국세행정」을 구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,
- 기부금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

참고 1 - 예상 질문 및 답변



1.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?

- ▶ 세법*에 규정된 공익법인, 공익단체 등(종전 법정·지정기부금 단체,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)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.
 - * 법인세법 § 24②·③, 소득세법 § 34②·③, 조특법 § 76 및 § 88의4 등

2.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?

- ▶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에서 기부금단체 관련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권한 신청 메뉴로 자동연결되고, 본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발급 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가능합니다.
 - * 신청경로: 홈택스 > My홈택스 또는 자주찾는메뉴 >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(기부금단체 메뉴) >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

3.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?

▶ '21.1.1.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가능합니다.

4.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가능한지?

▶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·고시된 연도의 1.1.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·고시된 이후에 발급가능합니다.

예) 기부일(1,31,), 지정·고시일(6,30,) → 6,30, 이후 발급(기부일자 1,31,로 기재)

5.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?

- ▶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('저장'또는 '삭제') 여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나, 기부자별 발 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 · 보관 ·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.

(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작성·보관·제출해야 함)



6. 기부금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(수정·삭제) 요청 방법은?

▶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(수정·삭제)을 요청할 수 있고, 기부금단체는 기부자의 입금내역 등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승인(반려) 처리합니다.[참고4, 참고6]

Q

7. 휴대전화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?

▶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 전화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합니다.

QA

8.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?

- ▶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.
 - ※ 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 시 기부금단체가 수정발급 가능[참고6]

Q

9.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?

▶ 쌀,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가능합니다.

참고 2 - 기부금영수증 관련 법령

- 법인세법 제75조의4【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】
-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12.31.〉
- 1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(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경우
 - 가.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: (중략) 100분의 5
 - 나.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: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 분의 5
- 2.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: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

-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"기부금영수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,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(이하 "전자기부금영수증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
- 법인세법 제112조의2【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】
-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 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※ 부 칙 〈 제17652호, 2020.12.22. 〉

제9조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- 소득세법 제81조의プ(기부금영수증 발급·작성·보관 불성실 가산세)
- ① 제34조 및 「법인세법」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,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[「법인세법」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(이하 "전자기부금영수증"이라 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"기부금영수증"이라 한대)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- 1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(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한 경우
 - 가.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: (중략) 100분의 5
 - 나.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: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 의 100분의 5
- 2.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경우: 그 작성·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
- 소득세법 제160조의3【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의무 등】
-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"로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부 칙 〈법률 제17757호, 2020.12.29.〉

제14조(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참고 3 - 기부금 영수증 관련 서식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3서식] <개정 2021. 3. 16.>

_ == ==	1311 1 12 1 100 2 10	1 1] 10 202	0. 10.						
일련번호			기부금	급 영	수 증				
※ 뒤쪽의 작성	 ;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	기 바랍니다.				(앞쪽)			
● 기부자						(11 /			
성명(법인명)]등록번호 업자등록번호)						
주소(소재지)	, , ,							
❷ 기부금	 단체								
단체 명		사업	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				
소 재 지		기누		익법인등 근	거법령				
③ 기부금	모집처(언론기관 등)								
단체 명		사업	 자등록번호						
소 재 지		,							
④ 기부내용	<u> </u>								
	구 분	04 81 01		내 용		금 액			
코 드	(금전 또는 현물)	연월일	품명	수량	단가				
٢ۓ	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	세특례제한법_	」 제76조·제8	88조의4 및	「법인세법」	제24조에 따른			
기부금을 위	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	증명하여 주시	기 바랍니다.						
					년	월 일			
신청인									
(서명 또는 인)									
위	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빈	맛음을 증명한	나니다.					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(서명 또는 인)

기부금 수령인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5호의2서식] <개정 2014.3.14>

 사업 연도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기부자별 발급	남명 세 서	_	법인명 시업자등록 번호		
일련 부		기부자 성명 (상호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기 부 명 세			발급명세	
번호 	· 일		주 소 (본점 소재지)		코 드	금 액	발급 번호	발급 일
		'						

작성 방법

※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(10)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기부금(30), 지정기부금(40)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5호의3서식] <개정 2021. 3. 16.>

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

니어어트	
사업연도	~
(과세기간)	
(-1.11)	

1.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(단체)	① 단체 명		② 대 표 자	
	③ 사업자등록 번호 (고유번호)		④ 전화번호	
	⑤ 소 재 지			
	⑥ 유 형 (해당란에 √)	■ 정부등 공공■ 교육■ 종교■ 사회복지■ 자선■ 의료■ 문화■ 학술■ 기타		

2.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

(단위: 원)

① 구 분	⑧ 합 계		9 법	⑨ 법정기부금		⑩ 특례기부금		⑪ 지정기부금	
⑫ 기부자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법 인									
개 인									

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제3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1.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2. ⑥ 유형란: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(단체)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.
- 3. ⑧ ~ ⑪ 란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.
- 4.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(「법인세법」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)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